

[첨부] 대기업집단 제재·처벌규정 현황

대기업집단 제재·처벌규정 현황 (’16.04.26 현재)

11개 법률, 총 31개 조항, 65개 제재·처벌규정

법령	규제내용	제재내용							
		의결권제한	영업정지	과태료	이행강제금	과징금	벌금	징역	양벌규정
공정거래법 제8조의3	[지주회사 설립 제한]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·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 설립·전환하는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채무보증 등을 해소 필수	주식처분명령 받은 날 부터 의결권제한					2억원 이하의 벌금	3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	[상호출자 금지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·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·소유 등 금지	시정조치명령 받은 날 부터 해소시까지 의결권제한				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10%이내 과징	2억원 이하의 벌금	3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9조 제3항	[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·소유 금지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의 취득·소유 금지	시정조치명령 받은 날 부터 해소시까지 의결권제한				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10%이내 과징	2억원 이하의 벌금	3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9조의2	[순환출자 금지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 금지	시정조치명령 받은 날 부터 해소시까지 의결권제한				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취득가액의 10%이내 과징	2억원 이하의 벌금	3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10조의2 시행령 제17조의5	[채무보증 금지]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 금지 (일부 수출금융 등 예외)					범위만 채무보증액의 10%이내 과징	2억원 이하의 벌금	3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11조 시행령 제12조의3	[금융·보험사 의결권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·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금지 (임원 선임·해임 등의 경우에는 15% 제한)	주식처분명령 받은 날 부터 의결권제한					2억원 이하의 벌금	3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11조의2 시행령 제17조의8	[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%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대규모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필수	주식처분명령 받은 날 부터 의결권제한		1억원 이하의 과태료					

” 제11조의3 시행령 제17조의10	[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(금융업·보험업 회사 제외)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회사의 소 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 공시 필수	주식처분명령 받은 날 부터 의결권제한		1억원 이하의 과태료					
” 제11조의4 시행령 제17조의11	[기업집단현황 등 공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 반현황, 주식소유현황,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, 순환출자 현황, 의결권 행사 여부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 황 등에 관한 사항 공시 필수	주식처분명령 받은 날 부터 의결권제한		1억원 이하의 과태료					
”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	[주식소유현황 신고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·채무 상황·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						1억원 이하의 벌금		벌금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	[채무보증현황 신고]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대 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						1억원 이하의 벌금		벌금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14조 시행령 제21조	[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” 지정]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 증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						(허위자료제출) 1억원 이하의 벌금 (회계감사미실시)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	(회계감사미실시)2년 이하의 징역	벌금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14조의2	[계열사 편입·제외 심사]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 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의 요청이나 직권으 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 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			1억원 이하 과태료					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	[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]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 이 경영권의 승계,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,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의 경우 심의를 거쳐 승인 취소 가능					승인취소시 지원액의 3배 과징금			
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8호 제8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조의5	[비금융주력자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취득한 지 분의 합이 출자총액의 30% 이상인 경영참여형 사모 투자전문회사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 식총수의 4%(지방은행지주회사 15%)를 초과하여 은 행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금지 (금융위원회 승인시 예외)	한도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		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처분 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3 이내 (매1일당)				
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1조	[비금융주력자 은행 주식 보유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취득한 지 분의 합이 출자총액의 30% 이상인 경영참여형 사모 투자전문회사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%(지방은행 15%)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 보유 금 지 (금융위원회 승인시 예외)	한도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			처분 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3 이내 (매1일당)				
자본시장법 제87조 제3항	[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 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 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결 권 행사 제한 (15%)						(의결권행사시)2억원이하 의벌금 (주식미처분시)1억원이하 의벌금	(의결권행사시)5년이 하의징역 (주식미처분시)3년이 하의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
” 제112조 제5항	[신탁재산 의결권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						2억원 이하의 벌금	5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263조 제2항	[채권평가회사 등록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이 10% 미만이어야 금융위원회에 채권평가회사 등록 가능		등록 취소 가능						
” 제249조의10 제4항 시행령 제271조의13 제5항	[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출자지분이 30%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인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보고		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산명령				3천만원 이하의 벌금	1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시행령 제271조의14 제8항	[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제한]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시 출자총액의 30% 초과 출자 금지		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산명령						
” 제249조의13 제1항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	[투자목적회사 주주·사원 자격 제한]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 불가						3천만원 이하의 벌금	1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249조의18	[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 등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시 일정 기간(5~10년)내 지분증권 처분 강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지분증권 등 취득·소유 금지						3천만원 이하의 벌금	1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” 제345조 제1항	[종합금융회사 자금지원 금지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주식 교차취득, 신용공여 등 금지						3천만원 이하의 벌금	1년 이하의 징역	벌금과 징역형을 개인과 법인 모두에 부과 가능
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	[유통산업 점포 개설·변경 등록 의무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체인점(일부)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개설·변경을 등록하여야 함			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		3천만원 이하의 벌금	1년 이하의 징역	
” 제12조의2	[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]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직영점 및 체인점(일부)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령 가능		영업정지(1개월)	1억원 이하의 과태료					
해외진출기업 복귀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	[국내복귀기업 자금지원 제한]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용·설비투자금액·고용보조금 지원시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제한 가능						3천만원 이하의 벌금	3년 이하의 징역	

방송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항	[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소유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·지분 총수의 10% 초과 소유 금지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·지분 총수의 30% 초과 소유 금지		업무정지(6개월) 또는 허가, 승인, 등록 취소						
방송광고판매 대행법 제13조 제3항·제4항 시행령 제9조	[광고판매대행자 소유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·지분 총수의 10% 초과 소유 금지 (지주회사는 주식·지분 소유 불가)		업무정지(6개월) 또는 허가 취소						
신문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	[일반일간신문 소유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50% 초과 취득 또는 소유 금지	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		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				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2항	[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]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회사와 그 계열회사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 49% 초과 소유 금지	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							
계		12개	6개	8개	2개	5개	17개	15개	15개
최저		의결권 제한	1개월 이내 영업정지	500만원 이하	처분 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3 이내 (매1일당)	위반금액의 10% 이내 (주식취득가액, 채무보증액)	3천만원 이하	1년 이하	
최대			허가, 승인, 등록취소 등	1억원 이하		지원액의 3배 상당	2억원 이하	5년 이하	